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48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1항제1호	250	350	500
나. 법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	법 제103조 제5항	10	10	10
다. 법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않은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	법 제103조 제1항제2호	250	350	500
라.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8호 또는 제9호(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1호	100	150	200
마. 법 제40조제1항제6호(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1항제3호	300	400	500
바. 법 제40조제1항제7호·제9호의2·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(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3항제1호	150	200	300
사.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·반입 신고를	법 제103조	150	200	300

하지 않은 경우	제3항제2호			
아. 법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,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2호	100	150	200
자. 법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1항제4호	250	350	500
차.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1항제5호	500	500	500
카. 법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3호	100	150	200
타.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4호	100	150	200
파. 법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5호	100	150	200
하.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6호	100	150	200
거. 법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7호	100	150	200
너. 법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03조 제4항제8호	100	150	200
더. 법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	법 제103조 제2항	200	300	400